2025학년도 2학기 전과 시행 계획

1. 목적

재학생들이 적성과 희망에 따라 학과을 선택하여 교육받을 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전과를 실시하고자 함

2. 시행근거

가. 고등교육법시행령 제29조 제3항
나. 중원대학교 학칙 제22조(전과)
다. 중원대학교 학사운영규정 제122조(전과)
라. 중원대학교 학사운영규정 제124조(전과 자격요건 및 제한)
라. 중원대학교 장학금지급 규정 제11조(신청자격 제한)

3. 전과 신청기간: **2025년 7월 1일(화) ~ 7월 7일(월)**

4. 전과 대상 및 허용범위 (근거: 학사운영규정 제124조)

가. 대상자: 2학기부터 7학기인 재학생
나. 전과 자격요건 및 제한

1) **재학기간 중 총 평점평균 1.75이상**
2) **해당 학년 수료학점의 80% 이상을 이수한 자**

다만, 학과 구조조정으로 부득이 전과를 할 경우에는 예외

구분	수료학점의 80%	비고
2014학번 이전	학기별 평균 14학점	학칙 제45조 (수료 인정학점)
2015학번 ~ 2024학번	학기별 평균 13학점	
2025학번 이후	120학점 - 학기별 평균 12학점 135학점 - 학기별 평균 13학점	

3) 전과는 횟수 제한이 없으며, 편입생은 한 학기 이수 후 전과 가능
4) 예·체능 특기자로 입학한 경우 실기수학능력을 고려하여 전과 제한이 가능
5) 간호학과, 임상병리학과, 작업치료학과로 전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학과 입학정원의 범위를 초과할 수 없으며, 전과 여석 산정 기준일은 전과 공고일

6) 전과에 필요한 이수 학점 및 성적 외에 학과의 특성상 추가 자격요건 지정 또는 면접을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 교무처를 경유하여 총장의 승인 필요

※ 항공운항학과, 항공정비학과 전과 요건

학과	항공운항학과	항공정비학과
전과요건	- 1종 항공신체검사증명서	- 토익 750 이상
	- 성적: 총 평점평균 B학점(3.0) 이상 - 인성검사 및 면접실시	

※ 항공운항학과, 항공정비학과 전과시 조종사 및 정비사 면허 취득을 위해 8학기를 초과할 수 있음

다. 전과 여석 산정

1) **전과 허가인원: 모집단위별 입학정원의 50% 범위 내 허가**

-「붙임 2. 2025학년도 2학기 전과 여석 현황」참조

2) 학년에 따라 모집중단 학과는 전과신청이 제한될 수 있음

5. 전과 신청 절차

가. 전과 신청서(본인이 출력, 본인 및 보호자 날인) 작성

나. 성적증명서 1부 첨부

※ 항공운항학과, 항공정비학과 지원자 추가 제출 서류

1) 유효기간 내 TOEIC(토익) 영어 성적표 원본 1부(항공정비학과 지원자 해당)

2) 항공신체검사증명서 1부(항공운항학과 지원자 해당)

다. 현 전출 학과 학과장, 전입 학과 학과장 및 학장으로부터 각각 날인 받은 후 전입 단과대학통합행정팀으로 2025년 7월 7일(월)까지 제출

6. 면접 실시 안내

가. 학과에 따라 별도 면접등이 진행될 수 있음

나. 일시 및 장소: 해당 학과별로 자체적으로 실시

다. 면접 결과 단과대학 행정팀을 경유하여 교무처 학사팀 공문 송부: 2025년 7월 11일(금) 까지

라. 유의사항

1) 면접위원은 해당 학과 교원을 원칙으로 면접 실시

2) 면접점수는 면접위원의 평균으로 구함

7. 전과 확정 예정: 2025년 7월 25일(금) → **전·출입학과에 통보**

전입 희망학과의 전과여석보다 전과 지원자가 많을 때는 총 평점평균, 평점합계, 취득학점합계, 이수과목 수 순으로 선발

8. 학점 인정

가. 전과한 학생의 교과목 이수는 이미 취득한 학점에 관계없이 전과가 승인된 학과의 교육과정에 따라야 한다. 다만, 이미 이수한 과목 중 전입학과의 교과목과 동일한 교과목은 전입학과의 이수구분에 따른 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음

나. 전과의 경우 전출 학과에서 이수하였던 전공과목은 일반선택으로 변경신청하여야 하며, **전입 학과의 전공과목들을 새로이 이수해야 하므로 졸업시기가 늦어질 수 있음**

9. 주의사항

가. **전과를 허가한 학기(2025학년도 2학기)에는 성적장학금 수혜 대상에서 제외 됨**

나. 재학 중 전과한 학생은 **전과한 당해 학년에 적용되는 교육과정을 이수하여야 함**

다. 전과로 인한 **등록금액의 변동에 주의**